

제3편 학사행정	현장실습학기제규정	문서번호	3-03-15
		제정일자	2012.07.30.
		개정일자	2020.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전공 관련 국내·외 산업체에서의 학기 단위 현장실습제(취업약정형 포함)운동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재학생의 졸업학년도 2학기 등록 학생 중 국내 각종 산업체에서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15주(500시간)이상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학기 현재 산업체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해외 현장실습은 12주(500시간)이상 실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산업체 선정

제3조(산업체 선정) ①현장실습 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학부(과)의 학부(과)장 및 참가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는 전공 관련 적정 산업체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현장실습학기제 참가를 위한 산업체의 인정범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산·학·연·관 협약업체 및 기관
2. 산업체 지정 요청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한 산업체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4.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대학에 인가한 위탁교육 산업체
5.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7.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8. 기타 근로자의 인적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및 기관

제4조(현장실습학기제 협약)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산업체는 우리 대학과 실습생, 실습처 간의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학기제 의뢰 및 선정) 각 학부(과)의 장은 제4조에 협약된 실습처로 부터 공문 또는 수락통보서를 받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6조(현장실습학기제의 시기) 현장실습학기제는 졸업학년도 2학기에 15주(500시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현장실습은 12주(500시간)이상 실시한다.

그 외 학부(과) 특성상 필요할 경우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등록 및 수강신청)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학기에 등록을 하고, 현장실습 학기제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과목은 현장실습학기제

매뉴얼에 표기한다.

제8조(학점인정) ①산업체 현장실습 학기제를 통한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 학기제 수행 중인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현장실습 업체의 부도, 휴·폐업, 도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업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잔여기간의 실습을 계속할 수 있다.

③현장실습기간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질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울 때

④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된 실습시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현장지도교수) 각 학부(과)의 장은 현장실습 참가 학생들을 지도할 현장실습 산업체의 현장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습학기제 사전교육) 현장실습 학기제 참가 학생들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참가에 따른 전공 내용과 현장실습의 연계성 및 실습에 관한 유의사항을 사전교육하여야 한다.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사전교육시간을 현장실습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조(순회지도) ①학과별 지도교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실습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3회 이상 순회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유선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현지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학과별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순회지도계획서를 작성, 취업지원처장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현장 순회지도시 현장실습 산업체의 동향과 참가 학생의 현장실습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해당 지도교수는 실습 종료와 함께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처장에게 제출한다.

⑤해당 지도교수는 참가 학생의 취업연계 등을 위해 산업체와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실습의 무효) ①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실습은 무효 또는 취소 될 수 있다.

1. 현장실습 제외 또는 제한 대상(학생) 및 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에 해당된 경우
2. 현장실습기관의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5. 현장실습 기간 중에 교내 계절학기 수업, 부속기관 시행 어학프로그램 및 개인적 해외여행 등으로 기간이 중복된 경우
6. 지도방문 시 실습학생이 약정된 실습장소에 없는 경우
7. 대학에서 사내전화로 유선 지도 시 3회 이상 실습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8. 실습중 교직원이 지도 방문하여 실습내용이 목적과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9.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실습일지 미제출 시 학점 불인정

제4장 성적평가

제13조(현장실습일지 제출) ①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1주일 이내에 현장실습일지 등 기타 서류를 해당 학과에 제출한다.

②해당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와 현장실습 최종성적평가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취업지원처에 제출한다.

제14조(성적평가) ①현장실습의 성적은 출근부, 현장실습일지, 산업체 현장지도 담당자가 평가한 현장실습평가서와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의 기록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학부(과)의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②현장실습 성적 환산표 (현장실습메뉴얼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만족도 조사) ①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 및 산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현장실습 산업체가 참여한 현장실습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